

공정거래위원회 수평기업결합 규제의 성과 평가 연구: SK텔레콤 심결사례를 중심으로

최성락·박정아*

<目 次>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 기업결합 규제
- IV. 연구의 분석틀
- V. SK텔레콤 기업결합 규제의 성과분석
- VI. 결 론

<요 약>

1999년 12월, 이동통신 시장에서 제1위인 SK텔레콤은 3위 이동통신사업자인 신세기통신과 합병하기로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업결합이 경제적 효율성 증진보다는 시장 독과점화의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2001년 6월까지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감소시키라는 의결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SK텔레콤의 기업결합 이후 이동통신 시장의 독점도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규제의 성과를 분석 평가한다.

분석결과, SK텔레콤-신세기통신간의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독점도 지수는 증가되었지만 시장의 독점력은 증가되지 않았다. 또한, 가격, 생산량, 품질 측면에서 살펴본 소비자 후생은 오히려 증가되었다. 즉, 이동통신 시장은 외연적으로는 독과점적 시장구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쟁적으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는 시장집중도 지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기업결합 규제가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각각의 산업과 시장에 적합한 효율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수평결합】

* 동양공전 비서행정전공 전임강사

**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I. 서 론

1999년 12월, 이동통신 시장에서 제1위 시장점유율을 달성하고 있던 SK텔레콤은 제3위 이동통신 사업자인 신세기통신과 합병하기로 하였다. 당시 이 기업결합과 관련해서, 이 기업결합을 허용하면 이동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이 결국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반대 입장과, 급변하는 통신시장에서 경제적 효율 증진을 위해서 기업결합은 불가피하다는 찬성 입장이 공존하였다. 이러한 상호 대립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5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의 기업결합은 경제적 효율성 증진보다는 시장 독과점화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 판단을 내렸고, 따라서 독과점도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2001년 6월까지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감소시키라는 의결을 하였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이전에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의 기업결합 건은 소위 인터넷 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환경 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규제가 전통적인 기준하에서 지속되어도 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급성장하면서도 시장판도가 계속 변화하는 통신시장에서 과연 효율성 효과를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막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이 있고, 2001년 6월말까지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을 달성하여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본 사례에 대한 후속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간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사례는 단순히 한 기업결합 사건에 대한 규제 사례가 아니라, 전통적 산업과는 다른 통신 및 인터넷 산업에 대하여 전통적인 규제기준과 다른 규제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로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본 기업결합 사례가 독점도에 미친 영향과 경제적 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점검하여, 당시 전통적인 기업결합 규제 논리에 따라 이루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의 성과와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과와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 이후 시간적 간극이 필요한데, 이제는 기업결합이 이루어진지 4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기업결합 규제의 성과가 어떠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00년 기업결합 이후 이동통신 시장의 독점도

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규제의 성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feedback을 통하여 향후 정보통신 및 인터넷 산업에서의 기업결합 규제 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기업결합 규제에 관한 이론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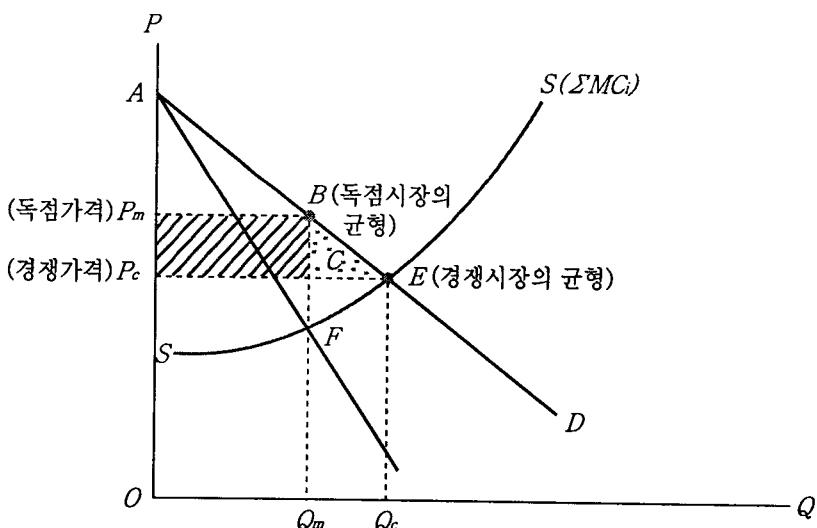
1) 기업결합의 의의

기업결합이란 각각 독립적인 형태로 존재했던 개별 기업들이 하나의 동일집단으로 묶는 것으로서, 기업간의 자본적·인적·조직적인 결부를 통하여 기업활동을 단일한 관리체제하에 통합시켜 개별기업의 독립성을 소멸시키는 기업간 결합의 과정과 형태를 말한다(권오승, 1996). 기업결합은 크게 수직적 결합, 수평적 결합, 혼합적 결합으로 유형화된다. 수직적 결합(vertical integration)이란 최종 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투입물(input)을 공급하는 상부시장(upstream) 기업과 최종재화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하부시장(downstream) 기업간의 결합을 뜻하고(조은기, 1999), 수평적 결합(horizontal integration)은 동종 시장 기업들간의 기업을 의미하며, 혼합적 결합(conglomerate mergers)은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다양한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간 결합이라 할 수 있다.

이중 기업 결합에 있어서 가장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종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인 수평적 결합이다.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간의 수평적 결합은 해당 상품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시장 독점력의 증가는 시장의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과연 정부는 이러한 수평적 기업결합을 규제하여야 하는가의 여부, 규제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어느 만큼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논의는 크게 구조주의적 접근법과 성과주의적 접근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2) 구조주의적 접근

구조주의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독점적 구조는 바로 시장의 경제적 효율성 저해와 연결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구조주의적 접근은 경제학의 독점 및 과점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위 <그림 1>에서 완전경쟁 시장이라면 수요곡선 D 와 공급곡선 S 가 만나는 E 점에서 시장균형이 이루어지고, 가격 P_c 하에서 생산량 Q_c 가 달성된다. 그러나 독점시장에서는 공급곡선 S 와 한계수입곡선 MR 이 만나는 F 점에서 시장균형이 이루어지고, P_m 가격에서 Q_m 만큼 생산된다. 즉, 독점시장에서는 완전경쟁시장에서보다 가격이 $P_c \rightarrow P_m$ 로 증가하고, 생산량은 $Q_c \rightarrow Q_m$ 로 감소하여, 최종적으로 $\triangle BEF$ 만큼 사회 후생 손실이 발생된다. 쿠르노 모형 등 과점 모형에서도, 독점시장일 경우보다는 정도가 덜하지만 완전경쟁시장에서보다 가격은 상승되고 생산량은 감소되어 사회후생손실이 발생된다¹⁾. 이와같이 시장구조가 독과점 시장일 때에는 필연적으로 경쟁적 시장구조에 비하여 사



<그림 1> 독점시장에서의 균형과 경제적 효율성²⁾

1) 대표적 복점 모형인 쿠르노 모형에서의 생산량은 완전경쟁시장의 $2/3$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대표적 과점 모형 중 하나인 카르텔 모형에서는 독점에서와 같은 가격과 생산량이 달성된다.

2) 이준구, 2004, 미시경제학, 법문사.

회후생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독과점도를 증가시키는 수평적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정당성을 얻게 된다.

이와같이 시장구조와 성과는 체계적인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는 것 이 구조(Structure)–행태(Conduct)–성과(Performance) 분석의 패러다임으로서 산업조직론에서 전통적 견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의 대표적 학자가 Stigler라 할 수 있는바, Stigler는 수평적 기업결합으로 시장의 독점도가 증가하면 가격 상승, 생산량 하락 등 독점력행사로 인해 사회 후생이 감소된다고 보고 있다(Stigler, 1968). 이러한 분석틀 하에서 시장의 구조는 시장의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시장 성과를 높일 수 있다(이재우·장영재, 2000).

이러한 구조주의적 접근하에서는 시장의 독점도를 측정하는 CR_k 지수 (k-firm concentration ratio),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와 같은 집중지표³⁾를 시장 지배력의 척도로 활용하고, CR 지수나 허핀달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가될 경우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결합을 규제하게 된다.⁴⁾

3) 성과주의적 접근

성과주의적 접근은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곧바로 경제적 비효율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독과점화가 진실로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시키는가를 검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점력 자체는 시장지배력을 나타낼 수도 있으나, 기술개발을 무기로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이 존재하듯이 독점도가 효율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이재우, 1999), 독과점 기업의 이윤율은 시장지배력의 산물이 아니라 효율의 산물일 수도 있는 것이다(이재우·장영재, 2000).

-
- 3) CR_k 지수는 상위 k 기업 집중율로서, 시장의 N개 기업중 상위 k번째 기업까지의 시장점유율을 합계한 수치이고, 허핀달–허쉬만 지수는 산업내 모든 기업의 점유율을 제곱한 수치를 합계하여 구한 지수이다.
 - 4) 미국은 기업결합 규제의 기준으로 허핀달–허쉬만 지수를 사용하며,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 한국등에서는 CR_k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같이 시장의 독과점화는 독과점기업의 효율성을 반영할 수 있다 는 논리를 효율성 항변이라 하는데, 이러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효율성 항변의 최초의 경제학적 논거는 Williamson(1968)에 의하여 제공되었다(이규억, 2001). Williamson은 비록 수평적 기업결합으로 독점이 형성되어 가격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하여 비용이 저하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효율성 향상에 의한 사회후생증대효과가 독점화에 의한 사회후생감소효과보다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성과주의적 접근법에서는 독과점 기업에 의한 시장집중이 반드시 시장지배력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집중과 시장지배력이 서로 무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모형이 Baumol – Panzar – Willig(1982)에 의해 제시된 경합시장 이론(contestable market theory)이다(황인학, 1999). 경합시장이란 기업이 시장에 자유로 진입할 수 있고, 또한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고 이탈해 나갈 수 있는 시장이다. 경합시장 하에서는 비록 시장 구조는 독과점 상태이지만 독과점 기업들은 +의 경제적 이윤을 얻을 수 없으며,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져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된다. 즉, 경합시장 하에서는 기업 수가 별 의미를 갖지 않으며, 시장이 독과점적 구조라 하여 비효율적인 것도 아니다(이준구, 2004).

즉, 성과주의적 접근에서는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가 반드시 비효율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독과점 기업이 반드시 시장 지배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구조주의적 접근법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기업의 집중도에 따라 기업결합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 기업결합이 시장의 집중도를 증가시켜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시킬 수도 있지만,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의 집중도 증가는 규모의 경제 등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고, 효율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의 집중도가 증가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업의 집중도만을 보아서는 아니되며,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의 효과를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2. 수평기업결합 규제 관련 선행연구

1) 주요 선행연구

공정거래위원회의 수평기업결합 규제와 관련된 국내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재우(1999)는 한국의 제조업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러너 지수 및 Shapiro 지수와 같은 전통적인 독점력 지수와 DW 후생성과지수를 비교하여, 독점력 지수가 후생성과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였다. 노희진(1999)은 은행업, 기계전기기업,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이들 산업에서의 기업결합이 효율성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였다. 기계전기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기업결합은 합병회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재우·장영달(2000)은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허핀달 지수와 여러 CR k 지수 가운데 어떤 지수가 상대적으로 이윤을 잘 설명하는지를 분석하여 지수와 이윤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양 지수의 설명력이 비슷하지만 고집중 산업에서는 양 지수의 괴리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황인학(1999)은 제조업 부문 21개 산업을 대상으로 시장집중도와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였는데, 집중도가 신뢰할만한 시장지배력의 척도라는 전통적인 가설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표 1〉 주요 선행연구

	시장집중도	경제적 효율성	대상 산업	결론
이재우(1999)	러너지수 Shapiro 지수	DW후생성과지수	제조업 전체	집중도와 경제적 효율성간 큰 상관 관계없음
노희진(1999)	기업결합	비용 탄력성	은행, 기계전기, 서비스업	기계전기, 서비스업에서 효율성 증가
황인학(1999)	CR지수 HH지수	후생손실 삼각형	제조업 21개 산업	큰 상관관계 없음
이재우· 장영달(2000)	CR지수 HH지수	이윤율	산업 전반	지수간 설명력 차이 존재
성낙일(2004)	시장구조 선발자의 이득 및 기업행위 소비자 행위 기업이윤	가격변동 노동생산성 비용항목	이동통신 시장	시장집중도는 심화되었으나, 경제적 효율성 변동 없음

성낙일(2004)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의 기업결합 사례를 대상으로 경쟁상황에 미친 영향과 효율성 향상 효과를 분석하였다. 경쟁상황은 시장구조, 선발자의 이득 및 기업행위, 소비자 해지율 등으로 측정하였고, 효율성 향상효과는 가격변동, 노동생산성, 비용 항목 등으로 측정하였는 바, 경쟁상황은 악화된데 반해 효율성 향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이 시장집중도를 심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2) 선행연구의 한계

우리나라의 수평기업결합 규제와 관련된 연구는 독점도 지수가 경제적 효율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가 연구의 주된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독점도 지수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의 여부와 경제적 효율성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는가에 따라 연구의 방법이 달라지고 있고, 시장집중도가 증가된다 하더라도 그에 비례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주된 연구 방향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실제 기업결합 규제가 이루어지는 각각의 구체적인 시장에서 시장독점도와 경제적 효율성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하는 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하나의 시장에서의 시장 경쟁상황과 경제적 효율성을 비교한 연구로는 성낙일(2004) 연구가 있다. 그런데 성낙일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격변동, 노동생산성, 비용항목 등의 항목을 사용하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에는 소비자 효율과 생산자 효율이 존재하는데, 사회의 경제적 효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생산자 후생보다는 소비자 후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경제적 후생을 나타내는 지표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성낙일의 연구에서는 가격변동, 노동생산성, 비용 항목 등 생산자 후생을 측정하여 비교하고 있다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기업의 독점력 측정보다는 경쟁상황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시장집중도와 경제적 효율성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기업결합 규제를 대상으로, 이 기업결합이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시장집중도와 소비자의 경제적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를 각각 살펴봄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SK텔레콤 심결의 성과를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III.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 기업결합 규제

1. 공정거래위원회의 수평기업결합 규제 현황

우리나라에서 기업결합 규제를 근거지우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7조이다. 공정거래법 7조 1항 및 3항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강요 또는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결합 규제의 제한기준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이 일어나는가’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시장을 확정하고,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국제적 경쟁상황,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있는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경쟁제한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은 경쟁제한성 추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경쟁제한성 추정제도는 공정거래법 제7조 4항에 규정된 것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인 경우, 제2위인 회사와의 차이가 시장점유율 합계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 이상인 거래분야에서 당해 기업결합으로 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즉, 우리나라의 독과점 기업 규제는 기본적으로 산업 구조주의에 입각하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장점유율과 합병시의 시장점유율 증가량에 의해서 경쟁제한성을 일차적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산업구조주의를 경쟁제한성 판단의 일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추정’만으로 고려하여 반증이 있을 때에는 다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가 하는 소비자 후생 중심의 규제를 가미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 M&A가 늘어남에 따라 연간 600여건의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경쟁제한 가능성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업체 간 수평결합이 2002년 151건, 2003년 151건으로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결합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혼합 결합으로 2002년은 총 386건, 2003년은 359건으로 전체에서 60% 이상을 차지한다. 이중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2003년도 7건, 2002년 6건으로, 전체 기업결합 신고건 중 시정조치가 부과되는 비율은 1% 정도로 미국의 3~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공정거래백서, 2004).

2. SK텔레콤 기업결합 사례

SK텔레콤은 1999년 12월 21일 포항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신세기통신 주식의 51.19%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999년 12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기업결합의 관련시장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이동전화시장’으로 정의하여, 셀룰러 이동통신과 PCS를 합친 것을 해당 시장으로 보았다. 당시 이 이동전화 시장에서 국내시장은 5개사 경쟁 체제를 이루고 있었고, 가입자 기준 SK텔레콤 43.2%, 신세기통신 13.8%, LG텔레콤 13.4%, 한통프리텔 18.1%, 한솔엠닷컴 11.7%로 SK텔레콤이 시장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의 기업결합으로 SK텔레콤의 점유율이 결합 후에 56.9%로 상승하고 2위와의 차이가 SK텔레콤 점유율의 25%를 넘어서게 되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의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추정하였고,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와 경쟁제한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로는, 이동전화 시장은 네트워크 산업으로서 가입자 확보가 사업의 필수조건으로서 타사업자에 비해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면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발생하여 사업자간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통신산업분야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전세계적으로 대규모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며,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서비스지역 및 서비스종류의 확대를 통해 많

은 가입자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된다. 따라서 이 기업결합으로 통신망의 통합운영, 신규투자의 중복회피, 국제경쟁력강화 등 최대 10년간 2조 7,776억원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양사의 교환기, 기지국 등 기존 통신망의 통합, 향후 중복투자의 회피, 가입자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서비스 제공 원가를 절감하고 연구개발이나 유통망의 통합 등을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는 측면이 있으며, 외국업체와의 제휴, 국제 기술표준 협상에서의 유리한 위치확보 등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 여부로는, SK텔레콤은 경쟁사에 비해 통신망커버리지, 재무구조, 유통망, 연구개발 능력 등이 전반적으로 우월 하므로 시장에서의 경쟁이 축소될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단하였다. 동 시장에서의 SK텔레콤 시장지배력이 강화되어 SK텔레콤이 가격 및 거래조건을 선도하고 타사업자는 이에 순응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원가하락 요인이 있을 경우에도 요금인하를 지연시키거나, 부가서비스의 개발을 지연시키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게 되며, 셀룰러 단말기의 수요독점을 형성하게 되므로 수요독점력을 이용하여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레텍을 통하여 단말기를 집중공급받음으로서 단말기 공급회사 간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업결합이 향후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경쟁축소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것이며 그 독과점 시장구조가 장기간 정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효율성 증대 효과가 이러한 독과점 폐해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하였다.

① SK텔레콤과 신세기 통신은 양사의 이동전화 가입자 기준 시장점유율 합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2001년 6월말까지 50%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회사인 SK텔레텍을 통하여 공급받는 셀룰러단말기 수량이 2005년 12.31일까지 연간 120만대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③ 단말기시장에서의 경쟁제한 방지를 위하여 신세기통신이 요금을 인상함으로서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하거나, 요금을 인하함으로서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배제를 도모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세기통신의 이용요금도 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반드시 한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SK텔레콤은 2001년 6월 말 까지 시장점유율 50% 이하 조건을 충족하였고, 2002년 1월 11일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을 인가하여 2002년 1월 13일, 양 기업의 기업결합이 완성되었다.

〈표 2〉 SK텔레콤-신세기통신간 기업결합 경과

연 도	경 과
1999년 12월 21일	SK텔레콤, 신세기통신 주식 51.19%를 취득하기로 계약 체결
1999년 12월 23일	기업결합 신고
2000년 4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SK텔레콤에 대하여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2001년 6월 30일	SK텔레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이행조건인 시장점유율 50% 이하 달성
2001년 9월 28일	SK텔레콤, 정통부에 합병인가 신청
2002년 1월 11일	정통부, SK텔레콤-신세기통신간 기업결합 인가
2002년 1월 13일	SK텔레콤-신세기통신 합병

IV.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이 시장의 독점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과연 시장의 후생증대 효과가 어느정도 존재하는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 기업결합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시장의 독점도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CR 지수와 HH 지수이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CR지수를 기본적인 독점도 판단의 지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3개사의 과점 체제이고, 따라서 CR_3 이상을 사용할 경우 100이라는 지수가 산출되게 되어 CR 지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본 이동통신 시장의 독점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HH 지수를 활용하기로 한다.

그런데, 독점도 지수는 기업의 독점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인바, 독점

력이란 “상당기간 동안 경쟁수준 이상으로 가격을 높게 유지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Market Power is the ability to maintain profitably prices above the competitive levels for a significant period of time)을 의미한다(Horizontal Merger Guidelines, 1992). 구조주의적 입장에서는 독점도 지수가 바로 기업의 독점력을 나타낸다고 보지만, 성과주의적 입장에서는 독점도 지수가 곧바로 기업의 독점력과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러므로, 성과주의적 입장에서는 독점도 지수 외에 기업의 독점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요구되는바, Horizontal Merger Guidelines에서의 독점력 정의에 따라 실제로 수익을 내는 능력을 실질적인 독점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점도 지수 외에 기업의 이윤율을 기업의 독점력을 나타내는 보조 지수로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적 효율성 판단의 기준인 소비자 후생 효과는 기본적으로 이동통신 가격의 변화 여부와 생산량 증대 효과 여부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구조 주의에서 주장하는 독과점으로 인한 사회 후생 감소 및 경제적 효율성 저해는 가격의 상승과 생산량 감소에 기인한다(<그림 1> 참조). 따라서 실제로 기업결합 후에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였는가, 생산량이 감소하였는가 여부는 독과점으로 인하여 경제적 효율성 저하가 실제로 발생하였는가를 판단하는 일차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⁵⁾.

그러나, 가격과 생산량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하여도, 품질이 저하되었다면 소비자 후생은 감소될 수 있다⁶⁾.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격과 생산량 변화를 소비자 후생의 일차적 지표로 살펴보고, 서비스 품질을 2차적인 지표로 검토하고자 한다.

-
- 5) 원칙적으로 경제적 효율성 여부는 소비자 후생삼각형 크기의 증가로 겸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요곡선이 우하향일 경우 균형 가격이 하락하면 후생삼각형은 증대하게 되지만, 수요곡선이 우상향일 경우 가격의 하락은 후생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가격이나 생산량 변수의 단독적인 변화만으로는 후생의 변화를 측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가격의 하락과 생산량의 증대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수요곡선은 우하향이 되므로 가격 하락, 생산량 증대는 후생삼각형 증대와 바로 연결될 수 있다.
 - 6) 가격과 생산량의 변화로 측정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면서 품질이 증대된다면 전체적 소비자 후생 측정은 어렵게 된다. 그러나 가격과 생산량의 변화로 측정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되면서 품질이 증대된다면 이는 기술적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품질의 변화는 기술의 변화에 의한 동태성 효율성을 의미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분석틀

분석의 목표	분석 비교 대상	분석 세부 단위
기업결합의 효과	시장 독점도	독점도 지수 (HH 지수) 기업의 이윤율
	경제적 효율성	가격의 변화 생산량의 변화 서비스의 품질

V. SK텔레콤 기업결합 규제의 성과분석

1. 독점도 분석

1) 독점도 지수 분석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1996년 신세기통신이 제2 이동통신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SK텔레콤(당시 한국이동통신)의 독점체제였다. 1996년 이후 이동통신사업자별 시장점유율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변화 (가입자수 기준)

(단위:%)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6
SK텔레콤	90.9	66.3	42.7	43.1	40.8	40.9	53.3	54.5	51.3
신세기통신	9.1	16.3	15.3	13.8	13.1	11.41	-	-	
KTF	-	6.0	16.8	18.2	19.7	33.0	31.9	31.1	33.0
한솔엠닷컴	-	6.1	10.1	11.7	11.7	-	-	-	
LG텔레콤	-	5.3	15.1	14.8	14.7	14.7	14.8	14.4	15.7

자료: 정보통신부 www.mic.go.kr

우리나라에서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독점도 지수는 CR 지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의 경우 최대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5개

사 뿐이었고, 2001년 이후에는 3개사 체제이기 때문에, 2001년 이후 CR₃지수값은 100으로 동일하여 독점도 지수로서의 의미가 크지 않다. CR 지수의 대안으로 HH 지수를 사용하여 독점도를 산출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국내 이동전화 시장의 HH 지수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6
HH 지수	8346	4763	2670	2735	2577	3108	4078	4145	3967

HH지수로 독점도를 판단하는 미국의 경우, HH 지수가 1,800 이상이면 특별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경쟁제한을 추정하고 있고, HH 지수가 2,500 을 상회하는 경우는 경쟁제한의 타당한 근거가 없음을 결합 당사자 기업이 입증해야만한다⁷⁾. 따라서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의 HH 지수는 상당히 높 은 수준이라 할 수 있고, 원래 2,500 수준이던 HH 지수가 SK텔레콤과 신 세기통신의 기업결합이 이루어진 2002년 이후 4,000 대로 증가된 것을 볼때,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은 시장독과점도를 높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볼때, 이동통신사업자는 보통 3개 기업 이하의 시장 체제를 갖추고 있다⁸⁾. OECD 30개국의 이동통신시장의 HH 지수를 살펴 보면, 12개국이 HH 지수 4000 이상을 보이고 있고, OECD 30개국 평균 치가 4,022로 4,000을 넘고 있다.

<표 6> OECD 국가의 HH 지수

구분	2000 이하	2000~3000	3000~4000	4000 이상	OECD평균
국가 수	1 (미국)	3개국	14개국	12개국	4,022

자료 : 정보통신부 www.mic.go.kr

7) FCC, 1992,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8) 각 국의 이동통신사업자수를 살펴보면, 네덜란드 5개사,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독일, 그리스, 멕시코, 영국 등이 4개사, 벨기에, 체코,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아일랜드 등이 3개사, 뉴질랜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이 2개사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국제비교를 통해서 보면, 이동통신 시장의 독과점화는 어느 한 국가의 특유한 현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추세라 할 수 있다. 각국에서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는 것은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화는 어느 한 기업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 특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SK텔레콤의 독점력 분석 – 이윤을 분석

SK텔레콤 및 기타 이동통신 회사의 당기순이익 추세는 <표 7>과 같다.

SK텔레콤의 이익은 1998년에서 1999년 사이에는 2배, 1999년에서 2000년에는 약 3배의 상승률을 보였고, 2000년 이후 2003년까지는 약 20% 정도의 이익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즉,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의 기업결합이 이루어진 2001년 이후 오히려 이익증가율은 급감하였다. 또한, 경쟁사인 KTF와 LG텔레콤의 경우도 5사 경쟁체제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었으나, 기업 결합이후인 2001년 이후에는 흑자 기조로 돌아섰고, SK텔레콤–신세기통신 기업결합이 이루어진 2000–2001년 경 KTF는 이익이 4배 증가하고, LG텔레콤은 4000억원 적자에서 1500억 흑자로 돌아서고 있다.

<표 7> 연도별 이동전화사업자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억원)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6.
SK텔레콤	1513	3041	9506	11403	15112	19427	11467
KTF	-141,1	-59,0	1159	4330	5321	4074	1838
LG텔레콤	-1549	-1616	-4423	1543	725.8	787.8	-86.7

자료: 각사 재무제표

SK텔레콤–신세기통신간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HH 지수는 4000 이상으로 증가되었지만, 이 기업결합을 전후해서 SK텔레콤의 이익증가율은 급감하였고, KTF와 LG텔레콤의 이익은 증가하였다. 시장지배력이란 시장에서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때,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HH 지수는 증가되었을지 몰라도,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은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경제적 효율성 분석

1) 가격

우리나라 이동통신 회사의 표준가격 체계 변화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이 <표 8>에서 보듯이, 이동통신 요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왔다. SK 텔레콤-신세기통신 기업결합 이후에도 이동통신 요금은 하락 추세에 있다. 독과점에 의한 시장지배력은 가격설정력에 있고 독과점에 의한 이윤은 가격 상승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SK텔레콤-신세기통신으로 인한 기업결합은 가격하락 추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2000년 경 이후 이동통신 요금체계는 매우 다양해졌는데⁹⁾, 가격 하락과 가격체계의 다양성은 가격 측면에서 살펴본 소비자 후생이 증가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8> 이동전화사업자별 표준요금 변화

(단위:원)

구분	사업자	1992.3	1996.2	1996.12	1997.9	1999.5	2000.4	2002.1	2003.1
기본료 (월)	SK텔레콤	27,000	22,000	21,000	18,000	18,000	16,000	15,000	14,000
	KTF	-	-	-	16,500	16,500	16,000	15,000	14,000
	LG텔레콤	-	-	-	15,000	16,000	15,500	14,800	13,000
통화료 (10초)	SKT	25	32	28	26	26	22	21	20
	KTF	-	-	-	19	19	18	18	18
	LGT	-	-	-	21	20	19	18	18

자료: 정보통신부 www.mic.go.kr

2) 생산량

이동통신 시장의 생산량은 가입자수로 판단할 수 있다¹⁰⁾. 우리나라 이동 전화의 가입자 수는 <표 9>에 나와있는데, 가입자수는 1998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1년 이후 가입자 증가율은 감소하였지만, 이는 SK텔레콤의 독점력에 의한 생산량 감소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총 인구의

9) 2005년 현재 SK텔레콤은 TTL 지정할인, 평크커플제, 팅버디제, 지역할인제 등 19 종류의 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0) 통신시장의 생산량은 통화수, 통화 시간, 가입자수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시장의 시장점유율 측정은 가입자 수를 기본적 변수로 하는바, 본 연구에서는 가입자수로 생산량의 측정 변수로 한다.

70% 이상이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시장 포화 현상에 의한 증가율 감소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시장의 독과점화는 가격 증가와 생산량 감소를 통해서 시장의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인데, 이동통신 시장의 독점도 지수 증가는 가격 하락과 생산량 증가를 수반하고 있다. 이는 비록 시장의 독점도 지수는 증가하였지만, 시장의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한국 이동전화 사업자별 가입자 수

(단위:천명)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9.
SK텔레콤	5,967	10,076	10,930	11,867	17,220	18,313	18,595
신세기통신	2,136	3,300	3,415	3,312	-	-	-
KTF	2,353	4,597	5,514	9,592	10,333	10,442	11,946
한솔PCS	1,411	2,792	3,223	-	-	-	-
LG텔레콤	2,156	3,369	3,650	7,276	4,790	4,837	5,699
합계	14,023	24,134	26,732	32,047	32,343	33,592	36,241

자료: 정보통신부 www.mic.go.kr

3) 품질

가격과 생산량만으로 소비자 후생을 판단하는 것은 상품의 동질성을 가정했을 때 의미가 있고, 만약 상품의 질이 저하된다면 가격과 생산량의 변화로 소비자 후생을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 후생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

이동전화서비스의 질에 대한 고객 만족도 추세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연도별 이동전화사업자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억원)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SK텔레콤	55	59	63	66	67	69	71	74
KTF	47	52	56	61	62	65	71	71
LG텔레콤	47	50	57	58	58	63	68	68

자료 : www.ncsi.or.kr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는 기업결합 이전과 이후 모두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장 큰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기업결합 이후에도 만족도가 하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즉, SK텔레콤 이동통신서비스의 가격 하락과 생산량 증가는 상품서비스의 질이 증가되면서 이루어진 현상으로서, 이는 질적인 측면에서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V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SK텔레콤-신세기통신 간의 기업결합이 시장의 독점도와 소비자 후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먼저 시장의 독점도 측면에서는 비록 시장의 독점도 지수는 증가하였지만, 이로 인한 SK텔레콤의 독점력의 증가(이윤율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는 이동전화의 가격이 저하되고 요금제도 선택의 폭이 증가되었다. 가격 하락과 동시에 시장 전체의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제품의 만족도도 상승하였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은 증가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SK텔레콤-신세기통신간의 기업결합은 비록 독점도 지수는 증가되었지만 시장의 독점력은 증가되지 않고 소비자 후생은 오히려 증가되었다. 이를 볼때, 이동통신 시장은 비록 외면적인 시장구조는 독과점 구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합시장적인 성질을 띠고 있어 경쟁적으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살펴보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의 기업결합이 시장의 독과점적 구도를 증가시킬 뿐이고, 경제적 효율성 증가의 폭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은 적실성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통적인 독점도 지수를 바탕으로 독과점성을 판단하고 전통 산업 분야와 새로이 성장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차이를 심결에 반영할 정도로 받아들이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본 사례는 정보통신 산업의 경우 독점도 지수의 증가가 반드시 시장 지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며, 독과점적인 시장구조 하에서도 소비자

후생이 중대되는 경쟁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사례 연구만으로 시장집중도 지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규제가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일반화 할 수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규제는 각각의 산업과 시장에 적합한 효율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본 연구는 시사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고동수. (2000). 21세기의 경쟁정책과 규제정책, 산업연구원.
- 권오승 외. (1996). 공정거래법집례100선, 법문사.
- 김미경 외. (1998). 한국 공정거래 정책의 제도화 과정, 규제연구 Vol.7 No.1.
- 김상권. (1997).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와 공정거래법, 한국경제연구원.
- 김희수 외. (2004). 주요 통신서비스 시장구조의 국제비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나석진. (1999).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규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집.
- 노희진. (1999). 기업결합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 제1차 정기학술 발표회.
- 박병진. (2002). 수평적 기업결합의 일방적 효과에 관한 분석, 산경연구 제 10 집.
- 성낙일. (2004). 이동통신시장 기업결합의 성과분석: SK텔레콤-신세기통신 기업결합 사례, 산업조직연구 제12집 제3호.
- 성소미. (2003).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규제의 과제와 개선방향, 경영법률.
- 신광식. (1992). 시장거래의 규제와 경쟁정책, 한국개발연구원.
- 심재한. (2000). 기업결합규제에 있어서의 제문제, 국제거래법연구 제9집.
- 윤세리. (2001).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규제에 관한 사례연구, 경쟁법연구.
- 이건호. (2004). 기업결합규제의 본질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6집 제4호.
- 이규억. (2000). 기업결합의 규제논리와 심결례의 분석: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산업조직연구 제9집 제2호.

- 이문지. (2001). 미국의 경제규제와 반트러스트법의 적용제외-통신산업의 경우를 중심으로-,상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 이상승. (2003). 셀로판 오류(A Reverse Cellophane Fallacy): 대한송유관공사 기업결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획정, 산업조직연구 제11권 제3호.
- 이상호 · 최은진. (2001). 차별화된 온라인 정보재 시장에서의 기업결합과 반독점 정책, 지역개발연구 제33권 제1호.
- 이재우. (1999). 독점도가 정부개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가?: 후생기준 성과지수의 측정, 경제학연구 제47집 제3호.
- 이재우. (1999). 제도적 경쟁제한요인 연구 - 공동행위 심결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제47집 제2호.
- 이재우 · 장영재. (2000). 허판달 지수는 CR_k 집중지수 보다 우월한가 : 가설 검증 및 정책적 함의, 경제학연구 제48집 제1호.
- 이재우. (2000).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규제의 정책실험 : 한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제48집 제2호.
- 이준구. (2002). 미시경제학(4판), 법문사.
- 정영진 · 주진역 공역. (2003). 미국독점규제법, 다산출판사.
- 조은기. (1999). 케이블 TV 의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봉쇄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3권 제4호.
- 한수용 외. (2003). 국내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상황 평가, SKTelecom 경영경제연구소.
- 황인학. (1999). 불완전경쟁의 사회적 비용과 시장집중도의 관계, 산업조직 연구 제7권 제 1호.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심결집 각연도.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각연도.
- 정보통신부, 정보화백서 각연도.
- Blair, R. and Kaserman, D. (June 1978). "Vertical Integration, Tying, and Antitrust Policy," *American Economic Review*, 68.
- Bork, Robert H. (1987). *The Antitrust Paradox*, New York: Basic Books.
- Demsets, Harold. (1969). "Why Regulate Utilitie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JLE)*, Vol. 11, April.

- FCC. (1992). *Horizontal Merger Guidelines*.
- Gear, Douglas F. (1987). *Business, Government and Society*, 2nd ed. New York: Mcmillan.
- Kling, Rob and Lamb, Roberta. (1999). "IT and Organizational Change in Digital Economies: A Socio-Technical Approach" mimeo. (presented in Understanding Digital Economy Conference in Washington, DC, May 1999).
- Paul A., David. (1990). "The Dynamo and the Computer: An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Modern Productivity Paradox,"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 Posner, Richard A. (1975). "The Social Cost of Monopoly and Regul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3. No. 4, August.
- Schelling, Thomas C. (1981). "Economic Reasoning and the Ethics of Policy," *Public Interest*, Spring.
- Stigler, G. (1968). *The Measurement of Concentration, Organization of Industry*, Homewood, Richard D. Irwin.
- Williamson, Oliver E. (1968). Economies as an Antitrust Defence: The Welfare Tradeoffs, *American Economic Review*, 58(1).
- Wolf, Charles,. Jr. (1979). "A Theory of Nonmarket Failure: Framework for Implementat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JLE)*, Vol.22. No. 1, April.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미국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v
미국 법무부	www.usdoj.gov
정보통신부	www.mic.go.kr
CS경영센터	www.ncsi.or.kr
KTF	www.ktf.com
LG텔레콤	www.lgtelecom.co.kr
OECD	www.oecd.org
SK텔레콤	www.sktelecom.com

Abstract

A Study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Horizontal Merger Regulation by Fair Trade Commission: Focusing on SK telecom case

Seong-Rak Choi · Jung-Ah Park

In DEC. 1999, SK telecom(SKT), the leading company of the telecommunication market, decided to merge with the Sinsege telecom, the third company in the market. On evaluating that this movement will enable SKT to monopolize the market, the Fair Trade Commission(FTC) ordered SKT to lower its market share by 50% with the due day of JUN. 2001. This study had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the regulation by monitoring the changes of the market in the context of efficiency and monopoly after the mergence.

The result showed that the mergence did increased the monopoly index but didn't give SKT the market monopoly. The consumer surplus, however, did increase in the view of price, quantity and quality. In other words, the contemporary telecommunication market, which seems to have a monopoly structure, is actually a competitive market.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re is a fallacy in FTC regulations done based on market concentration index and that farther regulations should be verified case by case.

【Key words : Fair Trade, FTC, Merger, Horizontal Merger】